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드론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제정에 따라
이관된 내용의 체계자구 정비>

■ 박상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497호)

2024. 8.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과 현 준

목 차

□ 박상혁의원 대표발의(2200497)	1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중 개인정보 수집가능 여부 등의 내용 삭제(안 제122조제1항)	3
가. 개정안의 내용	3
나. 검토의견	4
다. 국토교통부 의견	7
2.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내 무인비행장치 관련 조항 삭제(안 제127조제4항 삭제)	8
가. 개정안의 내용	8
나. 검토의견	9
다. 국토교통부 의견	9
3. 초경량비행장치 구조 지원장비 장착 의무 내 무인비행장치 관련 문구 변경(안 제128조)	10
가. 개정안의 내용	10
나. 검토의견	10
다. 국토교통부 의견	12

4.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준수사항 내 개인정보 수집 등(안 제129조제4항 부터 제6항까지)	13
가. 개정안의 내용	13
나. 검토의견	14
다. 국토교통부 의견	17
5. 무인비행장치 적용 특례 삭제(안 제131조의2)	18
가. 개정안의 내용	18
나. 검토의견	19
다. 국토교통부 의견	20
6. 특별비행승인 관련 권한의 위임·위탁 및 과태료 삭제(안 제135조제8항제3호 및 제166조제3항제10호 삭제)	21
가. 개정안의 내용	21
나. 검토의견	22
다. 국토교통부 의견	22

□ 박상혁의원 대표발의(2200497)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상혁의원 등 18인
2. 제 안 일 : 2024. 6. 14.
3. 회 부 일 : 2024. 6. 1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국, 유럽 등 항공선진국을 위주로 전 세계가 미래 항공신산업인 드론의 기술선도국 지위확보를 위해 개발·실증·상용화 등 안전관련 법령의 개정 등 맞춤형 산업육성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나, 우리나라는 드론을 유인비행체 안전관리 중심의 「항공안전법」 체계 하에 초경량비행장치의 일부로 분류하고, 드론 산업발전을 위한 법 개정 소요시마다 「항공안전법」내 예외규정 형태로 대응하고 있음.

이에, 드론산업의 조기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나, 동법은 드론 발전기반 조성, 드론시스템의 운영·관리 등 드론활용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기체등록, 조종자격, 비행승인, 사업체관리 등 안전관리까지 모두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러한 이유로 드론의 개발·실증·상용화 등에 필요한 안전 및 사

업 등에 관한 사항을 일원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산업발전에 따른 규제혁신에 적시에 대응하는 등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 기반마련과 드론산업의 질서유지, 건전한 발전 도모를 위해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바, 현행 「항공안전법」에서 정한 안전관련 조항 중 신규제정법의 조항과 중복되는 조항을 이관하고, 기존 「항공안전법」내의 중복조항을 삭제하는 등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상혁의원이 대표발의한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4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중 개인정보 수집가능 여부 등의 내용 삭제 (안 제122조제1항)

가. 개정안의 내용

무인비행장치는 초경량비행장치의 한 종류로서,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동력장치,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80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20미터 이하인 무인비행선이 있음.¹⁾

안 제122조제1항은 이러한 무인비행장치와 관련된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에 관한 사항이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에 이관됨에 따라 중복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임.

1) 「항공안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초경량비행장치"란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장치로서 자체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 등을 말한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초경량비행장치의 기준) 법 제2조제3호에서 "자체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무인비행장치, 회전익비행장치, 동력패러글라이더 및 낙하산류 등을 말한다.

5. 무인비행장치: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행장치

가. 무인동력비행장치: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

나. 무인비행선: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80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20미터 이하인 무인비행선

구 분	현행 「항공안전법」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치의 종류, 용도, 소유자의 성명, 제129조제4항에 따른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가능 여부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 소유자의 성명, 제21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가능 여부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인비행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처럼 「항공안전법」의 내용 중 무인비행장치 신고에 관한 내용을 동일하게 이관하였으므로 「항공안전법」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이해됨.

그러나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1조²⁾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신규, 변경·이전, 말소 신고서에는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수집 가능(카메라 등 탑재) 여부를 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즉 현재는 무인비행장치 외의 초경량비행장치의 경우에도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수집 가능 여부를 신고하여야 함.

2)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1조(초경량비행장치 신고) ① 법 제12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은 법 제124조에 따른 안전성인증을 받기 전(법 제124조에 따른 안전성인증 대상이 아닌 초경량비행장치인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를 말한다)까지 별지 제116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서 및 첨부서류는 팩스 또는 정보통신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1.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초경량비행장치의 제원 및 성능표
3. 가로 15 센티미터, 세로 10센티미터의 초경량비행장치 측면사진(무인비행장치의 경우에는 기체 제작번호 전체를 촬영한 사진을 포함한다)

【 초경량비행장치 신규, 변경·이전, 말소 신고서 서식 일부 】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6호서식] <개정 2021. 11. 19.>

초경량비행장치 **[] 신규**
 [] 변경·이전 **신고서**
 [] 말 소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 리 기 간 7일
비행장치	종류	신고번호
	형식	용도 [] 영리 [] 비영리
	제작자	제작번호
	보관처	제작연월일
	자체중량	최대이륙중량
	카메라 등 탑재여부*	

무인비행장치 외의 초경량비행장치에도 카메라 등을 탑재하여 개인 정보 등을 수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행과 같은 개인정보 등의 신고를 무인비행장치 외의 초경량비행장치에 면제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임.

따라서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기존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항공안전법」 제129조제4항을 무인비행장치로 한정하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에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고, 이 경우 현행과 같이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수집 가능 여부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등 그 내용을 유지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초경량비행장치(무인비행장치 포함)의 종류는 다음과 같음.

【 초경량비행장치의 종류 】

구분	종류(분야)	사진	개념	무게
초경량 비행장치 항공안전법 제2조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	동력비행장치		동력을 이용하고 좌석·무게가 요건에 부합하는 고정익비행장치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5제1호)	자체중량 115kg ↓ (연료, 비상용구 제외)
	행글라이더		체중이동 또는 날개를 조종(타면조종)하는 비행장치(항공안전법 시행규칙 §5제2호)	자체중량 70kg ↓ (비상용구 제외)
	패러글라이더		발로 이착륙하는 조종자가 탑승하는 날개에 연결된 하네스로 구성된 초경량비행장치	자체중량 70kg ↓ (비상용구 제외)
	기구류		기체의 성질·온도차 등을 이용하는 비행장치(항공안전법 시행규칙 §5제4호)	-
	무인 비행 장치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무인헬리콥터 및 무인멀티콥터(항공안전법 시행규칙 §5제5호 가목)	자체중량 150kg ↓ (연료제외)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무인비행선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5제5호 나목)	자체중량 180kg ↓
	회전익비행장치		동력비행장치의 요건을 갖춘 헬리콥터 또는 자이로플레인(항공안전법 시행규칙 §5제6호)	자체중량 115kg ↓ (연료, 비상용구 제외)
	동력패러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에 동력비행장치를 갖춘 비행장치(항공안전법 시행규칙 §5제7호)	자체중량 115kg ↓ (연료, 비상용구 제외)
	낙하산류		항력을 통해 낙하하는 사람(물체)의 속도를 늦추는 비행장치(항공안전법 시행규칙 §5제8호)	-

자료: 국토교통부

다. 국토교통부 의견

무인비행장치 관련 조항인 제129조제4항이 드론관리법에 이관됨에 따라 법 이용자 혼란방지를 위해 항공안전법 내 무인비행장치와 관련된 중복 내용 삭제에 동의하나, 무인비행장치 외에 초경량비행장치에는 다른 종류의 비행체도 포함되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 조문은 현행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2.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내 무인비행장치 관련 조항 삭제(안 제127조제4항 삭제)

가 개정안의 내용

안 제127조제4항 삭제는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내 무인비행장치 관련 조항 내용이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에 이관됨에 따라 중복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27조(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① ~ ③ (생략) ④ 제2항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이 필요한 때에 제131조의2제2항에 따라 무인비행장치를 비행하려는 경우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리면 비행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27조(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① ~ ③ (현행과 같음) <u><삭제></u>

나. 검토의견

무인비행장치 비행승인 관련 사항에 대하여 「항공안전법」과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의 해당 규정은 다음과 같음.

구 분	현행 「항공안전법」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무인비행장치 비행승인(안 제127조제2항)	제127조(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④ 제2항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이 필요한 때에 제131조의2제2항에 따라 무인비행장치를 비행하려는 경우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리면 비행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20조(무인비행장치 비행승인)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5조제1항에 따라 무인비행장치를 비행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리면 비행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처럼 「항공안전법」의 내용을 동일하게 이관하였으므로 「항공안전법」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이해되며, 안 제127조제4항의 내용 삭제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임.

다. 국토교통부 의견

무인비행장치 적용특례에 따른 비행승인 관련 사항이 드론관리법에 이관됨에 따라 법 이용자 혼란방지를 위해 항공안전법 내 무인비행장치와 관련된 중복 내용 삭제에 동의함.

가. 개정안의 내용

현행	개정안
제128조(초경량비행장치 구조 지원 장비 장착 의무)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구역에서 비행하려는 사람은 안전한 비행과 초경량비행장치사고 시 신속한 구조 활동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장착하거나 휴대하여야 한다. 다만, <u>무인비행장치</u>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8조(초경량비행장치 구조 지원 장비 장착 의무) ----- ----- ----- ----- ----- ----- ----- ----- <u>동력패러글라이더</u> <u>더</u> ----- -----.

구 분	현행 「항공안전법」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초경량비행장치 구조 지원 장비 장착 의무(안 제 70조제4항)	제128조(초경량비행장치 구조 지원 장비 장착 의무)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 구역에서 비행하려는 사람은 안전한 비행과 초경량비행장치사고 시 신속한 구조 활동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제9조(무선설비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드론 비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식별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선설비를 장착·운용하게 할 수 있다.

구 분	현행 「항공안전법」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장착하거나 휴대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9조에 따르면 초경량비행장치에 장착이 의무화된 구조 지원장비의 종류로 위치추적이 가능한 표시기 또는 단말기 등이 있으며, 「항공안전법」 제128조 단서에 따라 무인비행장치나 동력패러글라이더 등에는 구조 지원장비 장착이나 휴대 의무를 면제하고 있음.³⁾

한편,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에 무인비행장치 구조 지원 장비 장착을 명시하는 내용은 없으나,

동 제정안 제9조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안전하고 효율적인 드론 비행 환경 조성을 위하여 식별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선설비를 장착·운용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무인비행장치에도 위치 추적이 가능한 표시기 등을 장착할 의무가 부과됨.

3)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9조(초경량비행장치의 구조지원 장비 등) ① 법 제128조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제3호부터 제6호까지는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기구류 중 계류식으로 운영되지 않는 기구류에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1. 위치추적이 가능한 표시기 또는 단말기, 2. 조난구조용 장비(제1호의 장비를 갖추지 못한 경우만 해당한다), 3. 구급의료용품, 4. 기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 5. 휴대용 소화기, 6. 항공교통관제기관과 무선통신을 할 수 있는 장비

② 법 제128조 단서에서 “무인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

1. 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비행장치, 2. 계류식 기구, 3. 동력패러글라이더, 4. 무인비행장치

이에 개정안은 「항공안전법」 제128조 단서에서 구조 지원장비 장착이나 휴대 의무를 면제할 장치의 예시로 무인비행장치를 든 것을 삭제하고 이를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장치 중 하나인 ‘동력패러글라이더’로 수정하려는 의도라고 보임.

그러나 ‘동력패러글라이더’는 「항공안전법」 상 명시되는 기구가 아니고 「항공안전법」 하위법령에서 규정된 장치인바,⁴⁾ 법률에서 이를 예시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다른 예시 표현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다. 국토교통부 의견

무인비행장치 관련 조항이 드론관리법에 이관됨에 따라 법 이용자 혼란방지를 위해 항공안전법 내 무인비행장치와 관련된 중복 내용 삭제에 동의함.

4) 「항공안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초경량비행장치”란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장치로서 자체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 등을 말한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초경량비행장치의 기준) 법 제2조제3호에서 “자체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무인비행장치, 회전익비행장치, 동력패러글라이더 및 낙하산류 등을 말한다.

7. 동력패러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에 추진력을 얻는 장치를 부착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행장치

가. 착륙장치가 없는 비행장치

나. 착륙장치가 있는 것으로서 제1호 각 목의 동력비행장치의 요건을 갖춘 비행장치

가. 개정안의 내용

[illegible]

현행	개정안
<u>에서 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u> <u>⑥ 제5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12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비행승인 신청을 함께 할 수 있다.</u>	<u><삭 제></u>

나. 검토의견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한 개인정보 또는 개인위치 정보 수집 관련 사항 등에 대하여 「항공안전법」과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의 해당 규정은 다음과 같음.

구 분	현행 「항공안전법」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한 개인정보 또는 개인위치 정보 수집 관련 사항 등(안 제129조)	제129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의 준수사항) ④ 무인비행장치 조종자는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한다) 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이하 “개인위치정보”라 한다) 등 개인의 공적·사적 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를 전송하는 경우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형식,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각각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 조종자로서 야간에 비행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그 승인 범위 내에서 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12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비행승인 신청을 함께 할 수 있다.	제129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의 준수사항) ④ 무인비행장치 조종자는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한다) 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이하 “개인위치정보”라 한다) 등 개인의 공적·사적 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를 전송하는 경우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형식,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각각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 조종자로서 야간에 비행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그 승인 범위 내에서 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12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비행승인 신청을 함께 할 수 있다.

이처럼 「항공안전법」의 내용을 동일하게 이관하였으므로 「항공안전법」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이해되며, 제129조제5항 및 제6의 내용 삭제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임.

다만, 제129조제4항의 삭제와 관련하여, 현행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1조⁵⁾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신규, 변경·이전, 말소 신고서에는

5)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1조(초경량비행장치 신고) ① 법 제12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들은 법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수집 가능(카메라 등 탑재) 여부를 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무인비행장치 외의 초경량비행장치의 경우에도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수집 가능 여부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무인비행장치 외의 초경량비행장치에도 카메라 등을 탑재하여 개인정보 등을 수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등의 신고를 무인비행장치 외의 초경량비행장치에 면제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임.

【 초경량비행장치 신규, 변경·이전, 말소 신고서 서식 일부 】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6호서식] <개정 2021. 11. 19.>

초경량비행장치 [] 신규 [] 변경·이전 신고서 [] 말소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7일
비행장치	종류	신고번호
	형식	용도 [] 영리 [] 비영리
	제작자	제작번호
	보관처	제작연월일
	자체중량	최대이륙중량
	카메라 등 탑재여부*	

제124조에 따른 안전성인증을 받기 전(법 제124조에 따른 안전성인증 대상이 아닌 초경량비행장치인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를 말한다)까지 별지 제116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서 및 첨부서류는 팩스 또는 정보통신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1.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초경량비행장치의 제원 및 성능표
3. 가로 15 센티미터, 세로 10센티미터의 초경량비행장치 측면사진(무인비행장치의 경우에는 기체 제작번호 전체를 촬영한 사진을 포함한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기존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항공안전법」 제129조제4항의 적용대상을 초경량비행장치로 변경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 국토교통부 의견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준수사항 관련 조항이 드론관리법에 이관됨에 따라 항공안전법 내 무인비행장치와 관련된 중복내용을 삭제할 필요가 있으나, 제129조제4항의 경우에는 무인비행장치를 제외한 초경량비행장치에도 해당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5. 무인비행장치 적용 특례 삭제(안 제131조의2)

가. 개정안의 내용

안 제131조의2는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에 군용·경찰용·세관용 무인비행장치 등에 대한 적용 특례 사항이 이관됨에 따라 중복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31조의2(무인비행장치의 적용 특례) ① 군용·경찰용 또는 세관용 무인비행장치와 이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무인비행장치를 재해·재난 등으로 인한 수색·구조, 화재의 진화, 응급환자 후송,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비행(훈련을 포함한다)하는 경우(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한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제129조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29조제3항을 이 조 제2항에 적용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으로 본다.	<삭 제>

현행	개정안
이 경우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129조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나. 검토의견

군용·경찰용·세관용 무인비행장치 등의 무인비행장치 적용 특례 규정에 대하여 「항공안전법」과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의 해당 규정은 다음과 같음.

구분	현행 「항공안전법」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무인비행장치의 적용특례(안 제131조의2)	제131조의2(무인비행장치의 적용 특례) ① 군용·경찰용 또는 세관용 무인비행장치와 이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무인비행장치를 재해·재난 등으로 인한 수색·구조, 화재의 진화, 응급환자 후송,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비행(훈련을 포함한다)하는 경우(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한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제129조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29조제3항을 이 조 제2항	제4조(군용드론 등의 적용 특례) ‘ ① 군용 드론과 이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세관용 또는 경찰용 드론과 이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중 충돌 등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제9조, 제17조, 「항공안전법」 제79조 및 제84조제1항을 적용한다. 제5조(국가기관등 드론의 적용 특례)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드론(계약 등에 의한 임무 대행 사업자를 포함한다)을 재해·재난 등으로 인한 수색·구조, 화재의 진화, 응급환자 후송,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비행(훈련을 포함한다)하는 경우(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한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제20조제4항,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비행 중 발생한

구 분	현행 「항공안전법」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에 적용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으로 본다. 이 경우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129조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사고를 제11조에 따라 보고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으로 본다. 이 경우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보고받은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이처럼 「항공안전법」의 내용을 동일하게 이관하였으므로 「항공안전법」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이해되며, 안 제131조의2의 내용 삭제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임.

다. 국토교통부 의견

무인비행장치 적용 특례에 관한 사항이 드론관리법에 이관됨에 따라 법 이용자 혼란방지를 위해 항공안전법 내 무인비행장치와 관련된 중복 내용 삭제에 동의함.

6. 특별비행승인 관련 권한의 위임·위탁 및 과태료 삭제(안 제135조 제8항제3호 및 제166조제3항제10호 삭제)

가. 개정안의 내용

안 제135조제8항제3호 및 제166조제3항제10호는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에 권한의 위임·위탁 및 과태료 관련 내용이 이관됨에 따라 중복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35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 ⑦ (생략)	제135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 또는 항공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⑧ _____ _____ _____ _____.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제129조제5항 후단에 따른 검사에 관한 업무	<삭제>
4. (생략)	3. (현행 제4호와 같음)
제166조(과태료) ①·② (생략)	제166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_____ _____ -.
1. ~ 9. (생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제129조제5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범위 외에서 비행한 사람	<삭제>
④ ~ ⑥ (생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권한의 위임·위탁 및 과태료 관련 내용에 대하여 「항공안전법」과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의 해당 규정은 다음과 같음.

구 분	현행 「항공안전법」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권한의 위임·위탁 (안 제135조제8항 제3호)	제135조(권한의 위임·위탁)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 또는 항공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3. 제129조제5항 후단에 따른 검사에 관한 업무	제4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 중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드론관리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비행승인 범위 외에서 비행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안 제166조제3항 제10호)	제166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0. 제129조제5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범위 외에서 비행한 사람	제47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범위 외에서 비행한 사람

이처럼 「항공안전법」의 내용을 동일하게 이관하였으므로 「항공안전법」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이해되며, 안 제135조제8항제3호, 제166조제3항제10호의 내용 삭제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임.

다. 국토교통부 의견

무인비행장치 관련 조항인 제129조제5항이 드론관리법에 이관됨에 따라 법 이용자 혼란방지를 위해 항공안전법 내 무인비행장치와 관련된 중복 내용 삭제에 동의함.

문 의 처
02)6788-5580